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8482 제안연월일: 2025. 2. . 번호 제 아 가 : 버게시버의

제 안 자 : 법제사법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| 연 번 | 의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발의자<br>(제출자) | 발의일<br>(제출일) | 심사경과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1   | 형사소송법<br>일부개정법률안<br>(제2201409호) | 김도읍의원<br>대표발의  | 2024.7.5.   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6차<br>전체회의(2024.9.23.) 상정·<br>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<br>토론·소위회부<br>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4.12.19.)<br>상정·축조심사<br>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5.1.22.)<br>상정·축조심사・의결(대안<br>반영폐기) |
| 2   | 형사소송법<br>일부개정법률안<br>(제2201548호) | 김남희의원<br>대표발의  | 2024.7.9.   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6차<br>전체회의(2024.9.23.) 상정·<br>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<br>토론·소위회부<br>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4.12.19.)<br>상정·축조심사<br>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5.1.22.)<br>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<br>반영폐기) |
| 3   | 형사소송법<br>일부개정법률안<br>(제2201919호) | 최기상의원<br>대표발의  | 2024.7.18.   |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6차<br>전체회의(2024.9.23.) 상정·<br>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<br>토론·소위회부<br>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4.12.19.)<br>상정·축조심사<br>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5.1.22.)<br>상정·축조심사・의결(대안<br>반영폐기) |

| 연 번 | 의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발의자<br>(제출자) | 발의일<br>(제출일) | 심사경과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4   | 형사소송법<br>일부개정법률안<br>(제2207476호) | 황정아의원<br>대표발의  | 2025.1.13.  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<br>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<br>직접 회부(2025.1.21.)<br>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5.1.22.)<br>상정・축조심사・의결(대안<br>반영폐기) |
| 5   | 형사소송법<br>일부개정법률안<br>(제2207503호) | 서영교의원<br>대표발의  | 2025.1.14.  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<br>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<br>직접 회부(2025.1.21.)<br>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<br>법안심사제1소위(2025.1.22.)<br>상정・축조심사・의결(대안<br>반영폐기) |

- 가.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(2024.1.22.)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- 나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(2025.2.26.)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,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,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.

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

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,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소송기록 열람·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,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·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 법률 제 호

##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3항 중 "권리구제를"을 "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"로, "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"를 "인정하는 경우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4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    | 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      |  |  |
| 열람·등사) ① · ② (생 략)      | 열람·등사) ① · ② (현행과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<u>권리</u> | ③ <u>권리</u>               |  |  |
| <u>구제를</u>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| 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        |  |  |
|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         | <u>진술권 보장을</u>            |  |  |
|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      |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         |  |  |
|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       |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          |  |  |
|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        | <u>다만,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</u> |  |  |
|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       |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   |  |  |
|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        | 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     |  |  |
| 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|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⑤</u> (생 략)          |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     |  |  |

<u>⑥</u> (생 략)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